

TPP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유세별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sbyoo@kiep.go.kr, Tel: 044-414-1083)

차 례 ●●●

1. TPP TBT 배경
2. TPP TBT 협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3.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과의 비교 검토
4. 시사점 및 결론

주요 내용 ●●●

- ▶ 총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무역상 기술장벽(TBT) 조항은 WTO TBT 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WTO보다 수준이 높은 이른바 WTO+(WTO 플러스) 성격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음.
 - TPP TBT 협정은 적합성 평가 및 투명성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의 특정 관심 산업을 선정하여 부속서를 통해 그에 대한 기술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 한국의 기체결 FTA와 TPP 협정의 TBT 조항을 비교한 결과 TPP는 대체로 한·미 또는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나, 적합성 평가와 투명성 부분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 TPP TBT 협정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에 비해 적용범위, 적합성 평가, 투명성, 협력, TBT 위원회 등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투명성에 대한 내국민대우 보장 등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의 TBT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TBT 조항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과 플러스 조항에 따라서는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이미 TPP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조항을 수용하고 이행 중인바, TPP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단, 특정 산업별 부속서나 기체결 FTA 플러스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득실을 분석하는 한편, TPP 참여시 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조항을 마련하거나 국내법 제·개정 시 해당 조항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
- ▶ 아울러 TPP에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여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일부 조항의 경우 기존 양자 및 다자 간 TBT 협정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합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TPP TBT 배경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미국이 주도하는 Mega FTA로, 2010년 3월 멜버른에서 처음 협상이 시작된 후 약 6년 만인 2016년 2월 12개 참여국¹⁾이 공식 서명함으로써 발효를 앞두고 있음.

- 12개 TPP 회원국은 세계 GDP의 약 36%, 세계 전체 인구의 11%, 세계 교역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TPP가 발효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다자간 협정이 탄생하게 됨.

■ TPP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경쟁정책,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임(표 1 참고).

- 특히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조치(SPS), 무역상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수평적(horizontal)’ 협정을 통해 참여국간 분쟁해결 및 제도규정의 개발, 경쟁 등의 잠재력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

표 1. TPP 협정 주요 이슈

| 구분 | 주요 이슈 |
|---------------|--|
| 상품(Good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Trade in Goods) • 섬유 및 의류(Textiles and Apparel) •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 •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Customs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 • 원산지(Rules of Origin)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 서비스(Servi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간 서비스 무역(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 전자 상거래(E-Commerce) • 통신(Telecommunications) • 기업인의 임시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
| 그 외(Other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Investment)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환경(Environment) • 노동(Labour) • 정부 조달(Government Procurement) • 법적 및 제도적 이슈(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 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 • 국영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 협력 및 역량 강화(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

1)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의 P4(Pacific 4)에서 출발했으며, 이후 미국이 참여하면서 TPP로 확대되었음. 현재 TPP 참여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총 12개국임.

표 1. 계속

| 구분 | 주요 이슈 |
|-------------|--|
| 그 외(Other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 개발(Development) •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규제 조화(Regulatory Coherence) • 투명성 및 반부패(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 행정 및 제도규정(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 예외(Exceptions)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규정 및 정의(Initial Provisions and General Definitions) •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및 「TPP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 TPP는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세의 완전철폐와 함께 무역상 기술장벽 (이하 TBT: Technical Trade to Barriers)과 같은 비관세조치의 완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각국별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같은 기술장벽을 완화하고자 TBT 협정을 통해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이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상용화되는 표준 설정과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관련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TPP의 TBT 조항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앞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미국, EU, 중국, 캐나다, 베트남과의 FTA TBT 협정 중 핵심조항을 TPP TBT 조항과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참고가 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TPP TBT 협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가. TPP TBT 협정의 특징

■ TPP TBT 협정문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이하 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등 총 1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2 참고), 적용범위는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와 달리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 직속 기관들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규정, 표준 및 CAP의 준비(preparation), 채택(adoption) 및 적용(application)으로 되어 있음.

- TPP는 미국이 주도하여 타결된 협정인 만큼 한·미 FTA TBT 협정과 수준이 대체로 유사하나, 그중 적합성 평가와 투명성 부분은 기존 FTA TBT 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 TPP TBT 협정의 대부분은 WTO TBT 협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원활한 시장접근을 위한 WTO+(WTO 플러스) 조항을 두고 있음.
- 특히 회원국간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수용함에 있어 TPP TBT 협정은 기존보다 규제협력 및 모범규제관행 이행, 기술규정 및 CAP의 제·개정 절차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TPP는 여타 FTA와는 달리 적합성 평가절차, 기술규정, 투명성 및 협력 등에 관한 조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조항을 통해 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
 - 아울러 회원국간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공동협력 및 무역촉진, TBT 위원회 운영 등의 조항을 활용해 투명성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나. TPP TBT 주요 내용

-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에 대해서는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²⁾ 요구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 외에는 여타 양자 FTA TBT 협정과 유사하지만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승인, 면허 부여 등에 관한 조항은 기존의 양자 FTA 협정 조항보다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음.
 -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에 관해서는 TPP TBT 제8.9조 협력 조항에 광범위한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정하며, 결과의 미수용 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할 뿐 메커니즘 자체에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양자 FTA 협정에서 드물게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 내국민대우 △ 자국영역 내 거주 필수요건 금지 △ 부적합한 사유로 인정기관 수용 거절 금지 △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요구 금지 등의 의무('shall') 조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음.
- [투명성] TPP 협정은 △ 정보 공개 범위 확대 △ 통보 대상 및 범위 확대 △ 기술규정 등 제·개정 개발과정에 他 회원국 국민 참여 허용 등 WTO 협정 또는 기존 FTA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TPP 협정은 여타 FTA 협정과 달리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shall')하고 있음.
 - TPP는 다자간 협정인 만큼 중앙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직속 관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상기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아울러 TPP 협정에는 WTO TBT 협정이나 기존 양자간 FTA 협정과 달리 제·개정된 적합성 평가절차 및 기술규정에 대해 공표일과 시행일 간 유예기간(6개월 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 TPP TBT 협정문 제8.1조 정의에 따르면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는 한 회원국이 적합성 평가 문서에 대해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또는 영사비자(consular visas) 취득 목적으로 他 회원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수출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 아래 가장 먼저 제출하는 상품을 의미함.

- WTO TBT 협정과 대부분의 양자간 TBT 협정에서는 ‘합리적인 시간 간격(a reasonable interval)’ 또는 ‘충분한 시간(sufficient time)’ 등의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TPP 협정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회원국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됨.

■ **[협력 및 무역원활화]** TPP 협정문에서는 ‘협력 및 무역원활화’ 조항에 WTO TBT 협정 제5조, 제6조, 제9조를 기초로 한 CAP 결과의 수용 촉진 및 상호협력 관련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

- 상대국 영역 내 소재 기관에서 수행된 CAP 결과 상호인정 및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 수용 등 적합성 평가 절차 결과의 수용을 위한 메커니즘의 존재를 인정함.
- 또한 기술규정, 표준 및 CAP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제관행(이하 GRP: Good Regulatory Practice) 사용을 권장하고,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를 통해 규제접근(regulatory approach)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역내 상호협력 방안을 구축
-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수용 사유를 설명할 의무와 他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공동협력을 위한 특정 제안에 대해 고려할 의무가 있음.

■ **[TBT 위원회]** TPP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촉진을 목적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CAP 분야의 공동작업과 협정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TBT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TBT 위원회 기능은 △ 본 협정의 이행과 운영, 기술적 논의를 점진 △ 기술규정, 표준 및 CAP의 개발, 검토, 수정 등 회원국간 협력 장려 △ 회원국 영역 내 정부 및 비정부 기구간 협력과 더불어 비정부 기구간의 양자·다자간 협력 장려 △ 공통 접근법 개발 및 본 장과 관련된 표준, 지침, 권고,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촉진 등이 포함되며, TPP 발효 직후부터 1년 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TPP TBT 협정문(제8장) 주요 내용

| 조문 | | 주요 내용 |
|----|----------------------|--|
| 1조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s), 시장출시인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시장사후관리(post-market surveillance), TBT 협정(TBT Agreement), 검증(verify)에 대한 용어 정의 |
| 2조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무역장벽 제거, 투명성 강화, 더 나은 규제협력 및 모범규제관행(GRP) 증진 |
| 3조 | 적용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및 직속기관)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이하 CAP)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지방정부의 TBT 규정 준수 보장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리적 조치 적용 • 당사국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 채택·유지에 대해 방해 금지 |
| 4조 | TBT 협정문 내 특정 조항과의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협정상 다음 조항은 유지하거나 또는 일부 변형을 통해 TPP TBT 협정의 일부로 채택: |

표 2. 계속

| 조건 | | 주요 내용 |
|----|----------------------|--|
| 4조 | TBT 협정문 내 특정 조항과의 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 2.2, 2.4, 2.5, 2.9, 2.10, 2.11, 2.12조 - 제5.1, 5.2, 5.3, 5.4, 5.6, 5.7, 5.8, 5.9조 - 부속서 3-D, 3-E, 3-F항 • 분쟁해결의 미적용 |
| 5조 |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 존재 여부 판단을 위해 WTO TBT 위원회의 결정 적용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각기 상이한 기술규정 및 CAP에 대한 회원국간 공동협력 |
| 6조 | 적합성 평가(CA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인정·승인·면허 부여에 있어 he 당사국 영역 내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동일하거나 동등한 절차 적용) • 시험결과, 인증서 또는 검사를 요구할 경우,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당사국 영역 내 소재 요구 금지 △ 당사국 영역 외 소재한 평가기관의 사무실 운영 요건사항 부과 금지 △ he 당사국 영역 내 평가기관이 당사국에 제품 시험·승인·검사 수행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및 조건 준수 등의 결정을 위한 신청 허용 • 특정 제품의 CAP 단독 수행 방해 금지 • 정보요구의 제한,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 보호 및 검토절차의 타당성에 관한 적합성 평가 수행 시 he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 의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이유 △ 정보의 비밀유지 보장 방법 △ CAP의 운영에 대한 불만사항 검토 및 대응조치) • 적합성 평가기관간 인증·승인·면허부여 등을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활용 하는 것 방해 금지 • 적합성 평가기관들이 수행한 CAP의 결과 검증 방해 금지 • he 당사국 소재 인정기관 수용을 다음 사유로 거절 금지(△1개 이상 인정기관이 있는 당사국 내에서 운영 △비정부기관 △인정기관 인정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당사국 내 거소 △당사국 내 사무실 미운영 △영리기관 등) •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승인·면허 등 또는 MRA 활용 거절 시 사유 설명 • he 당사국 영역 내에서 수행된 CAP의 결과 수용 거절 시 사유 설명 • he 당사국의 MRA 협정 체결 협상 요청 거절 시 사유 설명 • 적합성 평가와 관련 영사거래(consular transaction) 요구 금지 |
| 7조 |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BT 관련 조치 개발 과정에 he 당사국 이해당사자의 참여 비차별적 허용 • TBT 관련 조치 개발에 전자적 도구, 공공지원활동(public outreach) 및 협의회(consultations)를 통해 추가적인 투명성 제공방안 모색 • 중앙정부기관(및 지방정부)으로부터 통보되는 제안 및 최종본을 단일 관보(official journal) 또는 단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표 •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CAP에 대해 WTO 및 TPP 회원국에 동시 통보 의무 • TBT 관련 조치에 대해 he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60일 의견 제시기간 부여(의견 제시 기간연장에 대한 합리적 요구 수용 고려) • 의견 제시 기간 종료 시점과 공표된 기술규정, CAP의 채택 시점까지 충분한 시간 제공 •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규정 또는 CAP의 최종안을 공표일 이전에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해당 기술규정/CAP의 목적 및 달성방법, 해당 기술규정/CAP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법, he 당사국의 의견에 대해 중대한 응답 공개, 중대한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 제공) |
| 8조 | 기술규정 및 CAP의 준수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정 및 CAP의 최종본 공표시점과 효력 발생시점 사이 '합리적 기간(6개월 이상)'을 제공하도록 노력 |

표 2. 계속

| 조건 | | 주요 내용 |
|-----|---------------|--|
| 9조 | 협력 및 무역원활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P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³⁾(△ 他 당사국 내 기관에서 수행된 CAP 결과 상호인정 △ 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간의 지역적·국제적 MRA의 존재 인정 △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평가를 위해 국제적 인정시스템 사용 △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또는 他 당사국이 지정한 기관 인정 △ 他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CAP 결과 인정 △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 수용) 규제협력 지지를 위한 메커니즘 존재 인정(△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 및 공동협력 △ 국가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과의 연대(부적절·비효율적인 경우 제외) △ 기술규정 및 CAP의 기초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활용 촉진 △ 他 당사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권장) 他 당사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 거절 시 이유 설명 표준, 적합성 평가, 인정, 계량 담당 기관(공공/민간) 간 공동협력 장려 |
| 10조 |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 무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기술규정에 대해 他 당사국에 기술적 논의 요청 가능 기술적 논의 요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또는 더 빠른 시일 내) 제기된 문제 논의 기술적 논의에 불참할 경우 논의내용 및 교환한 정보 기밀 유지 |
| 11조 | TBT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TBT 위원회 설치 TBT 위원회의 기능(협정 이행 및 운영 점검, TBT 관련 정보교환 및 기술적 논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검토·수정 포함 양자·다자 간 협력 권장, 당사국 영역 내 정부·비정부 기구간 협력 및 비정부 기구간 양자·다자 간 협력, 기술적 역량 수요확인 촉진, 비정부·지역·다자 기구 내 정보 교환, TPP 위원회 보고, 동 협정 이행에 관련된 조치 등) TPP 협정 발효 후 1년 내 위원회 개최(e-mail, 전화/화상회의, 국제포럼 등의 수단 이용) 위원회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진행 |
| 12조 | 접촉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당사국 내 접촉점 정보 他 당사국에 제공(변경사항 즉시통보) 접촉점(contact point)의 역할은 △ 동 협정의 논의, 요청, 시기적절한 정보교환의 촉진, 他 당사국 접촉점과 연락 △ 영토 내 관련 정부기관의 참여 조율 및 연락 △ 영토 내 이해당사자와의 조율 및 협의 △ 위원회에 의한 추가적 사항 |
| 13조 | 부속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은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 제8.3조에 명시된 적용범위 준수 TPP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이후는 최소 5년에 한 번 다음사항 준수 의무(△ 부속서에 포함된 분야 내 조치의 강화, 개선, 권고를 위해 부속서 이행 검토) |

자료: TPP TBT 협정문 토대로 저자 정리.

다. 부속서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EU, 미국, 캐나다와의 TBT 협정에서 일부 특정산업(자동차 및 부품)에 관해 기술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TPP의 경우 다양한 산업(품목)에 대해 기술규정을 다루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부 기체결·타결 FTA 협정⁴⁾은 특정분야(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등)에 관한 추가 협

3) TPP 협정문 제8.9조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수용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 회원국들은 하위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노력(may)하여야 하나 강제성(shall)은 부여되지 않음.

4) 한·터키(제5.3조 4항), 한·콜롬비아(제6.8조 3항), 한·베트남(제6.8조 3항) FTA 등에 특정분야에 관한 추가협력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력 제안에 대해 논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임.

■ TPP 협정문 부속서에는 와인·증류주, 정보통신제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기농제품 등 수출입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품목) 또는 과도한 규제부과가 우려되는 특정 품목에 한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 수록되어 있음.

- **[와인·증류주]** 총 25개 조로 구성된 해당 부속서(Annex 8-A)에는 와인 및 증류주에 대한 라벨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 정보를 나타내는 방식, 필수요건 또는 금지요건에 대한 조항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
 - 대부분 △ 알코올 함량 단위 등에 대한 표시(제6조) △ ‘와인(wine)’이라는 용어의 사용 허용(제7조) △ 로트 식별코드(lot identification code) 표시 허용(제13조) △ 생산/제조 일자, 소비/유통 기한 등 일자 표기 요구 금지(제15조) △ 상표/상호의 번역본 요구 금지(제16조) △ 양조관행(oenological practice) 공개 요청 금지(제18조) △ ‘아이스와인(Icewine 등)’의 표시 허용조건(제19조) △ 필수 증명 및 인증서 발급에 대한 규정(제21, 23조) 등 라벨링 정보 및 부착 방식, 허용 또는 금지되는 요구조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정보통신제품]** ICT 제품에 대한 규정은 부속서(Annex 8-B)에 3개 부분 총 13개 조항을 통해 ① 암호사용 ICT 제품 ② ITE(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제품의 전자파적합성 및 ③ 통신장비에 관한 지역협력 활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암호사용 ICT 제품에 대해 생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제품 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제조자/생산자에게 특정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도록 규정
 - ITE 제품이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자적 합성선언(SDoC)을 수용하며, 당사국에서 SDoC 수용을 위한 시험, 등록,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규정
 - 통신장비에 관한 지역협력 활동에 대한 규정은 통신장비(Telecommunication Equipment)에 적용되며, 통신장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APEC MRA(MRA-TEL)과 기술요건 동등성에 대한 APEC MRA(MRA-ETR) 등의 이행을 장려하도록 규정
- **[의약품]** 의약품은 부속서(Annex 8-C)에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승인, 중복검사 방지, 조화협력, 정보제공, 허가 결정 근거, 시판허가(marketing authorisation) 부여, 국제표준(CTD) 수용 및 채택⁵⁾ 의약품 실사에 대한 공동작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만일 당사국 영역 내 의약 제품의 규제 권한을 보유한 규제당국이 한 개 이상 존재할 경우, 당사국은 의약 제품 규제요건 결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규제권한의 중복성을 조사하고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제거(제6조)
 - 특정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 결정은 △ 사전임상(pre-clinical)과 임상(clinical)실험 데이터를 포함한 안전성 및 효능 정보 △ 제품의 질에 대한 정보 △ 제품의 안정성, 효능 및 사용정보가 명시된 라벨링 △ 제품 사용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근거하여 결정됨(제11조).

5)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 for Human Use)는 유럽, 미국 및 일본의 규제당국과 세 지역 내 제약업계간 인체용 의약품의 허가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의약품 허가 및 신고 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에 허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화장품]** 화장품 분야의 경우 부속서(Annex 8-D)에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품 규정 개발 및 규제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 시판허가절차 요건, 라벨링 규정, 동물시험 금지, 국제표준사용, 사후감시 결과정보 공유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는 중복검사 방지, 정보제공, 규제결정 소요시간(reasonable time period), 기밀유지 등 다수 조항이 동일하거나 유사함.
- **[의료기기]** 의료기기 분야는 부속서(Annex 8-E) 총 17개 조항을 통해 국제표준 채택, 제품분류 기준, 허가 결정 근거, 제조국의 시판허가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대체로 화장품 및 의약품 분야와 조항이 유사하나, 의료기기의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표준의 채택⁶⁾과 의료기기 시판허가 결정 근거 등에 대한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기의 시판 허가는 △ 안전성 및 효능(필요 시 임상실험결과 포함) 정보 △ 성능, 디자인, 제조품질 정보 △ 제품의 안전, 효과서, 사용법에 대한 라벨링 정보 △ 기기 사용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근거하여 결정됨(제12조).
-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조항은 부속서(Annex 8-F)에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표준에 정의된 용어 사용,⁷⁾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채택·적용에 대한 내국민대우, 비밀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전매제조법 관련 정보 수집에 있어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채택·적용은 WTO TBT 협정에 기초하며, 이외 △ 제도적 목적 이상의 정보 요구 금지 △ 他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보 비밀 보장 △ 자국 생산제품 관련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채택·적용을 타국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이 추가됨.
- **[유기농제품]** 유기농제품의 경우 부속서(Annex 8-G)에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관련 정보교환과 협력, 그리고 기술규정, 표준 및 CAP의 인정 또는 동등성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함.
 - 특히 △ 유기농제품, 해당 제품 인증 및 관련 관리제도 등의 정보 교환 △ 유기농제품 무역관련 국제지침·표준·권고의 개발, 개선, 강화를 위한 협력 △ 유기농 제품의 생산, 가공, 라벨링 관련 규정 시행 △ 유기농제품의 생산, 가공, 라벨링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CAP의 인정 또는 동등성 요구 시 수용 △ 수용 거부 시 사유 설명 의무 △ 조정 및 개선 지원을 위해 기술적 교류 참여 장려 등의 조항을 포함

■ TPP TBT 협정문 부속서 중 의료기기, ICT, 화장품 등 우리나라 주요 관심품목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6) 각 당사국은 제품의 범위를 의료기기 규제조화 단체(GHTF: 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에 의해 승인된 ‘의료기기’ 정의(Definition of the Terms ‘Medical Device’)와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에 명시된 용어의 의미와 상통하도록 정의할 것을 규정.

7) ‘식품(food)’, ‘식품첨가물(food additive)’ 및 ‘포장식품(prepackaged)’과 같은 용어는 포장제품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D 1-1985)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일반규격(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Food Additives When Sold as Such, CODEX STAN 107-1981)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3.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과의 비교 검토

■ 한국의 기체결 FTA 15건 중 11건⁸⁾은 TBT 협정문을 별도의 장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TPP TBT와 구성 면에서 유사함.

- 우리나라는 기체결 FTA에서 △ TBT 협정 재확인 △ 기술규정 △ 표준 △ 적합성 평가절차 △ 투명성 △ 협력 △ TBT 위원회에 관한 핵심 조항을 포함하여 10~11개 조항으로 구성된 TBT 협정문을 채택하고 있음.
- TPP TBT 협정은 한국의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WTO TBT 협정문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범위에서 각 국가별 기술규제정책, 우선순위 또는 산업별 주요 교역(민감) 품목에 따른 일부 특수 조항을 삽입하고 있음.

■ TPP TBT 협정을 한국의 기체결 FTA와 비교한 결과 TPP는 대체로 한·미 또는 한·EU FTA와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나, 적합성 평가, 투명성 등 일부 조항은 이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표 3 참고).

- 특히 TPP TBT 협정은 한국의 기체결 FTA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투명성 및 협력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적용범위]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대부분의 FTA TBT 협정의 적용범위는 대부분 중앙정부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TPP 협정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직속기관, 그리고 지방정부기관까지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음.

- 이는 WTO TBT 협정 제2조, 제3조에 걸쳐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WTO 협정과는 유사하지만, 기존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양자 FTA에서의 적용범위보다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적용범위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TBT 의무 강화로 해석할 수 있음.

■ [기술규정 동등성 및 상호인정]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과 TPP 협정은 공통적으로 WTO TBT 협정 제2.7조에 근거하여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규정 동등성 미수용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추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WTO TBT 협정에는 기술규정 동등성 수용을 장려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TPP 협정에는 기술규정 동등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EU FTA 이후부터 기술규정의 동등성 및 상호인정에 관한 개별 조항(article)을 마련하여 WTO TBT 협정에 기초한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비차별 원칙)과 투명성 보장(동등성 불인정 시 사유 설명) 등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음.
 - 한·미, 한·캐나다 TBT 협정은 여타 국가와의 FTA 협정과는 달리 특정 분야(자동차)에 대한 기술규정 동등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한·중, 한·베트남과의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동등성 미수용 시 사유 설명 의

8)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캐,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와의 FTA.

무에 대한 조항을 명시함.

- 따라서 동 조항은 WTO TBT+ 조항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의 기체결 FTA 일부 협정에 이미 존재⁹⁾하고 있어 TPP 협정 수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적합성 평가절차] 우리나라는 기체결 FTA TBT 협정과 TPP 협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에 대한 상호인정 추진 및 체결 등을 강조하고 있음. TPP 협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인정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이 기체결한 대부분의 FTA TBT 협정¹⁰⁾에는 CAP의 결과 수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존재를 인정하고 적합성 평가기관 내국민대우 등 상호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한국의 기체결 FTA 중 미국, EU, 호주, 중국,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와의 TBT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베트남, 콜롬비아, 페루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에서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 수용에 대한 내국민대우 조항과 함께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사안 협의조항이 추가로 적시되어 있음.
- TPP 협정에서는 CAP 대상제품을 시험·인증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이 당사국 영역 내에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국내거소요건’을 금지하며, 자국 또는 他 참여국 영역에 소재하는 정부기관이 특정상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 단독수행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TPP TBT의 적합성 평가기관 관련 해당 회원국 내 거소요건 금지 조항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는 없는 규정임.

■ [투명성]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협정과 TPP 협정은 모두 기술규제 조치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 他 회원국의 참여 허용과 함께 의견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등 WTO TBT 협정(제2.9조 및 제5.6조)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TPP 협정은 이에 추가하여 규제조치의 제·개정 후 해당 법령의 시행 시까지 특정 유예기간(6개월 이상)을 설정하고 있음.

-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의 경우 체결국마다 기술규정 및 CAP의 제·개정 공고 방식이 상이하나 대체로 他 회원국인의 참여 허용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적용하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택함.¹¹⁾
- 아울러 기술규정 및 CAP의 제·개정에 대해 他 회원국 의견 제시기간 60일을 제공하며, 기간 연장 및 기술규정 채택과 시행일 간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에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9) 한·페루(제7.5조), 한·호주(제5.4조), 한·콜롬비아(제6.5조), 한·중(제6.5조), 한·뉴질랜드(제6.6조), 한·베트남(제6.5조) FTA.

10) 한·미(제9.5조), 한·EU(제4.6조), 한·중(제6.6조), 한·호주(제5.6조), 한·뉴질랜드(제6.7조), 한·베트남(제6.6조), 한·터키(제5.6조), 한·콜롬비아(제6.6조), 한·싱가포르(제8.5조), 한·EFTA(제2.8조 4항) 등과의 TBT 협정에서 CAP의 결과 수용 촉진에 대한 메커니즘(△ CAP의 결과 수용 및 인정 △ 적합성 평가기관 인정·지정 △ 자발적 약정 체결 △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 등) 존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콜롬비아의 경우 예외적으로 他 회원국 내에서 수행된 CAP 결과의 인정 및 他 회원국 소재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생략되어 있음.

11) 칠레, 터키, 미국, EU, 캐나다, 호주와의 TBT 협정에는 기술규정 및 CAP의 제·개정 과정에 他 회원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페루,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협정에서는 해당 조치의 결과만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기술규정 및 CAP의 제·개정 과정에의 他 회원국인 참여 허용 조항이 부재한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등과의 협정에서는 기술규정의

- TPP 협정의 경우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CAP 제·개정 과정에의 他 회원국 참여에 대한 내 국민대우 외에도 전자적 도구, 공공지원활동(public outreach) 및 협의회(consultations)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他 회원국에 공개해야 할 기술규정 및 CAP 제정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o 새로운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모든 제정안과 더불어 기존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개정안과 최종본, 최종 개정본 등을 공개하여 他 회원국 이해관계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는 WTO TBT 협정 제5.6조 3항에 다소 가볍게 명시된 ‘...(중략)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하며,~’ 보다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한·미 FTA TBT 협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 o 또한 포괄적인 규제 협력을 위해 규제 대화체(regulatory dialogue) 설립, 규제접근(regulatory approach)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모범규제관행(GRP) 사용 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 밖에도 개도국 회원국에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협력] 협력 부분은 TPP TBT와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이 거의 유사함.

- TPP 협정과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체결 TBT 협정은 양자간 제도에 관한 상호간 이해 제고와 원활한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의 개발 및 증진을 목표로 함.
- 협력에 관한 이니셔티브는 △ 투명성 및 모범규제관행(GRP) 증진 △ 국제표준과의 정합 △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 및 활용 등을 포함하며, 관련 세부 내용은 선진 또는 신흥 교역국 체결 협정에 따라 다소 상이함.¹³⁾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미국, EU, 캐나다 등)과는 달리 개도국(중국, 베트남, 터키, 콜롬비아 등)과의 TBT 협정에 자동차 부품, 섬유, 의류 및 디자인, 화장품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협력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음.
- 반면 TPP 협정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할 장벽을 완화하고자 기술적 문제에 관한 협력 의무를 부여함.
- 그러나 WTO TBT 협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에 관한 조항은 TPP 협정에 존재하지 않음.

■ [TBT 위원회] TPP 협정과 우리나라의 모든 기체결 FTA TBT 협정⁴⁾ 모두 WTO TBT 협정 제3조에 기초하여 TBT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¹⁵⁾에 대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음. 다만 TPP 협정의 경우 기술적 역량수요 확인 등 양자간 FTA 협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조항들이 일부 추가되어 있음.

- TPP 협정에서는 TBT 위원회 설립을 통한 공동작업 강화 등의 협력 조항 외에도 각국의 조정자 지정 및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수의 참여국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WTO TBT 협

채택과 해당 규정 발효일시 간 기간연장 가능성에 대한 조항이 추가 명시되어 있음.

13) 백종현(2014, p. 16, 재인용).

14) 한·인도 FTA를 제외한 모든 기체결 FTA 국가와의 TBT 협정에 해당함.

15) TBT 위원회의 기능에는 △ TBT 장의 이행 및 운영 점검 △ 기술규정, 표준 및 CAP의 개발, 채택, 적용, 집행 등에 대한 문제 처리 및 협력 △ 해당 조치 관련 비정부간 지역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정보 교환 △ CAP 상호인정 관련 검토 및 협력 등이 포함됨.

정 이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

- TPP TBT 협정 제8.11조 9항에 명시된 위원회 의사결정 관련 조항을 통해 여타 양자 또는 지역간 FTA보다 한층 강화된 협력체제와 참여국간의 결속력을 짐작할 수 있음.

표 3. TPP 및 한국의 기체결 FTA TBT 주요 조항 비교

| 구분 | TPP | 한국의 주요 기체결 양자 FTA | | | | |
|---------------|-------------------------------------|-------------------|------|-------|-------|-----|
| | | 한·미 | 한·EU | 한·캐나다 | 한·베트남 | 한·중 |
| WTO TBT 협정 이행 | ○ | ○ | ○ | ○ | ○ | ○ |
| 적용 범위 | 중양정부 | ○ | - | ○ | ○ | ○ |
| | 지방정부 | ○ | - | - | ○ | - |
| 기술규정 | ◎ | ○ | - | ○ | ○ | ○ |
| 적합성 평가절차 |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 | ◎ | △ | △ | ○ | ○ |
| |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 | ◎ | ○ | △ | ○ | △ |
| | 상호인정협정 추진 | ○ | ◎ | ○ | ○ | △ |
| | 메커니즘 존재 인정 | ◎ | ◎ | ◎ | △ | ◎ |
| 투명성 | 기술규정, 표준, CAP의 제·개정 절차에 他 회원국 참여 보장 | ◎ | ◎ | ◎ | ◎ | - |
| | 의견 개진권 보장 | ◎ | ◎ | ◎ | ○ | ○ |
| | 채택된 제·개정에 대한 정보제공 | ◎ | ◎ | ○ | ○ | ○ |
| | 공표와 발효 사이 충분한 기간 제공 | ◎ | - | ○ | - | - |
| 협력 | 이니셔티브 협력 | ◎ | ○ | ○ | ○ | ○ |
| | 기술지원 제공 | ○ | - | - | - | ○ |
| 위원회 | TBT 협의체 구성 | ◎ | ○ | ○ | ○ | ○ |

주: 1) ◎는 WTO TBT + (플러스) 조항.
2) ○는 WTO TBT와 유사한 수준의 조항.
3) △는 WTO TBT - (마이너스) 조항.
4) -는 WTO TBT 협정에는 존재하나 해당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내 존재하지 않는 조항.

자료: 한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문 조항 및 TPP TBT 협정문 조항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우리나라는 TPP를 주도한 미국과의 FTA 협정을 기체결한바 TBT 협정의 대부분에서 이미 TPP와 유사한 수준의 TBT 조치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적합성 평가 및 투명성에 대해서는 TPP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련 국내법령과의 조화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적합성 평가의 경우 적합성 평가기관의 국내거소요건 금지 규정이 기존 양자 또는 다자간 FTA 협정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항이라는 점을 미루어 향후 우리나라 국내법이 해당 규정과 조화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공표와 효력 발생 사이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수기간에 관한 조항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규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필요 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투명성의 경우 한 회원국이 제출한 통보문에 대해 他 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으면, 의견에 대한 응답과 함께 당사국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투명성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함.

4. 시사점 및 결론

■ TPP TBT 협정 중 주요 쟁점사항인 적합성 평가 및 투명성 조항은 한·미 FTA TBT 협정이나 일본의 기체결 EPA TBT 협정에 적시되어 있는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됨.

- WIO TBT 협정문과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TBT 협정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최대 수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TPP의 TBT 협정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에 중점을 둔 미국과 일본 측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WIO TBT 협정 및 여타 한국의 기체결 FTA 협정에서 다소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던 제·개정된 기술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의 합리적인 시간 간격에 대해 TPP 협정에서는 구체적인 기간(6개월)을 제시하는 등 국가별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TPP 참여서 TBT 조항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과 플러스 조항의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이미 TPP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TBT 조항을 수용하고 이행 중인바, TPP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정 산업별 부속서나 기체결 FTA 플러스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경우 국내 표준이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여 부속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인해 업계에 특정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 전망
 - ICT 분야의 경우 APEC-MRA 및 SDoC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으나, '기술선택권'에 관한 조항은 국내법과의 조화여부를 확인할 필요
 - 그 외 와인·증류주, 화장품, 유기농 제품 등에 대한 부속서 조항은 법률상 충돌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수출입 비중에 따라 국내 업계와 정부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가 TPP 참여로 FTA TBT 플러스 조항을 수용하게 될 경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조항 수용 및 이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 또는 우위산업 품목들에 대해 관련업계와 득실을 분석하는 한편, TPP 참여 시 협상을 통해 예외조항을 마련하거나 국내법 제·개정 시 해당 조항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여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 기체결 FTA TBT의 플러스 조항인 ‘적합성 평가기관의 내국민대우’는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조항으로 국내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TPP 가입 전 ‘국내거소요건’ 금지에 관한 규정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내거소요건’ 금지 시, 한국의 TPP 참여국으로 수출할 경우 샘플통관비용 절감, 검사기간 단축, 검사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他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해당 품목 시험 및 평가 시 모니터링이 어렵고, 개도국의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 보유 여부가 불투명하여 신뢰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품목의 과잉공급 또는 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사항도 공존할 것으로 보임.
- 적합성 평가기관의 인정·승인 또는 면허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능력 수준을 공표하여 외국기관지정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의 양자 및 다자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TBT 제도개선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제도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KIEP**